KOSHA GUIDE

C - 86 - 2018

(5)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, 영 제76조에 의거 안전보건 사고 발생시 입찰참가제한은 다음과 같다.

제재 대상	입찰참가 제한사유	제재 기간
사업장에서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안전·보건조치를 소홀하여 근로자 사망	동시 사망자 10인 이상	1년6월
	동시 사망 6~9명	1년
	동시 사망 2~5명	6월
안전보건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	-	6월
안전보건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생명·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	-	1년

(6)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, 영 제80조에 의거 안전보건사고 발생시 산업안전보 건법에 의한 중재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가 부여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사망자수	영업정지기간
2~5명	3개월
6~9명	4개월
10명 이상	5개월

- (7) 안전보건사고 발생시 건설업체에 가해지는 행정제재 절차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입찰참가 제한

중대사고발생 사법처리(검찰 송치) 입찰참가제한(발주기관)

(나) 영업정지

중대사고발생 사법처리(검찰 송치) 영업정지요청(노동부)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(해당 행정기관)